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의무적 갱신〉

■ 윤재옥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629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윤재옥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629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의무적 갱신(안 제18조제4항 신설)	2

□ 윤재옥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629호)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재옥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4. 27.

3. 회 부 일 : 2026. 4.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란 위치정보 및 기상·소음 정보 등 도심항공교통에 필요한 정보로 도심항공교통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데이터 기반 인프라임.

따라서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 유지가 UAM 운항 안전 확보와 사업활성화를 위한 필수요소로서 매우 중요함.

이에 현행법은 관계기관이 공간정보 변경사항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보된 내용을 실제 공간정보에 즉시 반영하는 규정은 임의 규정에 머물러 있어 신속한 정보 최신화 및 서비스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공간정보 갱신 사항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갱신 의무’를 명확히 법률에 신설해 도심항공교통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미래 항공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18조제4항).

Ⅲ. 검토의견

1.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의무적 갱신(안 제18조제4항 신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부터 시설물 및 장애물 변경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를 갱신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8조(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부터 시설물 및 장애물 변경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를 갱신하여야 한다.</u>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현행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¹⁾는 국

1)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토교통부장관이 도심형항공기²⁾의 안전운항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하여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³⁾를 구축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도심항공교통사업자가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는 호환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통일된 규격에 따라 표준화하여 구축·관리될 필요가 있음. 이에 표준데이터셋⁴⁾은 항공장애물정보, 버티포트⁵⁾ 시설정보, 항행지원정보, 기반공간정보로 구성되어 있음.

항공장애물정보는 버티포트 및 도심항공교통회랑⁶⁾ 구역에 존재하는 지형 및 장애물에 관한 정보로서, 지표면 높이를 일정 간격으로 표현한 지형 정보와 산·언덕 등의 자연지물 및 식생, 건축물, 송전탑·기둥 등의

제18조(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형항공기의 안전운항 및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를 구축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축된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③ 도심항공교통사업자는 위치정보, 기상정보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 “도심형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또는 이에 준하는 기기 중 도심에서도 운항하기에 적합한 기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함.
- 3)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란 위치정보 및 기상·소음 정보 등 도심항공교통에 필요한 정보를 말함.
- 4) 도심항공교통이 도심 저고도(300~600m) 공역을 안전하게 비행하고 이·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일된 규격에 따른 데이터의 집합을 말함.
- 5) “버티포트”(Vertiport)란 도심형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항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시설과 사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시설을 말함.
- 6) “도심항공교통회랑”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형항공기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의 상공에 표시한 공간의 길을 말함.

장애물 정보로 구성됨.

버티포트 시설정보는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공간정보로 구축되는 시설정보로서, 이·착륙구역 및 터미널 등의 필수 시설, 유도로·계류장·정비시설 등의 필수지원시설, 버티포트 부속 시설물 등의 부가시설에 관한 정보로 구성됨.

항행지원정보는 기상·소음 등의 운항지원 관련 정보로서, 기상관측 및 통계자료 등의 기상정보와 소음측정 및 예측자료 등의 소음정보로 구성됨.

기반공간정보는 3차원 건물·교통·수자원·지형데이터 중 도심형항공기의 안전운항 및 상용화에 활용이 가능한 공간정보로서, 일반·공동주택 및 산업시설 등의 건물데이터, 교량·터널·고가도로 등의 교통데이터, 지형데이터로 구성됨.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 표준데이터셋>

항공장애물정보		버티포트 시설정보		항행지원정보		기반공간정보	
도심형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버티포트 및 도심항공교통 회랑 구역에 존재하는 지형 및 장애물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공간정보로 구축되는 시설정보		도심형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기상·소음 등 운항지원 관련 정보		3차원 건물·교통·수자원·지형데이터 중 도심형항공기의 안전운항 및 상용화에 활용이 가능한 공간정보	
구분	세부항목	구분	세부항목	구분	세부항목	구분	세부항목
지형	지표면 높이를 일정간격으로 표현	필수시설	이·착륙구역, 터미널 등	기상	기상관측, 통계자료 등	건물데이터	일반·공동주택, 산업시설 등
장애물	자연지물(산, 언덕), 식생 등	필수지원시설	유도로, 계류장, 정비시설 등	소음	소음측정, 예측자료 등	교통데이터	교량, 터널, 고가도로 등
	건축물, 송전탑, 기둥 등	부가시설	버티포트 부속 시설물 등			지형데이터	-
	...		...				



자료: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은 도심 속에서 저고도(300~600m)로 운항하므로, 버티포트 인근 항공장애물정보, 버티포트 시설정보 등의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가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⁷⁾.

이에 현재 도심지 실증구역(킨텍스~대덕비행장~수색비행장) 3개소에 대해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를 구축 중(‘26.5~10)이며, UAM 시범사업 추진을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제주, 대구·경북 등)에서도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 구축을 계획 중임.

7) 고고도(약 10,000m)를 활용하는 기존 항공체계에서도 항공장애물 등의 공간정보를 구축 중임.

그런데 현행법에서 도심항공교통사업자는 도심형항공기의 운항에 영향을 주는 시설물 및 장애물에 관한 정보 등의 변경사항을 통보할 의무가 있는 반면, 통보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에 반영하고 갱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은 도심형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인데, 예를 들어 UAM이 버티포트에 안전하게 이착륙하려면 이착륙 경로상의 가상 안전공간인 진출입표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하는데, 그 공간에 새로운 장애물이 생겼을 때 이를 즉시 공간정보에 반영하지 않으면 UAM이 장애물을 인지하지 못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부터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 변경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반영하여 갱신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함으로써, **UAM 운항의 안전성과 서비스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현행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⁸⁾에 따르면 도

8)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①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심형항공기의 운항에 영향을 주는 시설물 및 장애물에 관한 정보
2. 버티포트별 필수지원시설 및 부가시설의 현황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형항공기의 안전운항 및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심항공교통공간정보에는 도심형항공기의 운항에 영향을 주는 시설물 및 장애물에 관한 정보 뿐만 아니라 버티포트별 필수지원시설 및 부가시설 현황 등도 포함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⁹⁾에 따른 통보 대상 정보도 “갱신이 필요한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안 제18조제4항에 따라 갱신하여야 하는 대상 정보를 “시설물 및 장애물 변경사항”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나. 국토교통부 의견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이에 시행령은 “안정적인 운용에 영향을 주는 시설물 및 장애물이 설치·변경 또는 제거된 경우”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상위개념인 법에서는 “시설물 및 장애물 변경사항”보다 포괄적인 “변경사항”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됨.

9)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및 갱신) 도심항공교통사업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영 제17조제3항의 도심항공교통의 안정적인 운용에 영향을 주는 시설물 및 장애물의 설치·변경 또는 제거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통보해야 한다.

1. 갱신이 필요한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내용
2. 시설물 및 장애물의 설치·변경 또는 제거가 발생한 위치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갱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문 의 처
02)6788-5575